

광명시 여비지급 대상 및 한도액 규정

제정 1993. 5. 31 훈령 제118호
개정 2008. 6. 16 훈령 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지급대상 및 한도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 단, 자가 운전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의거 지급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